「이어드림(Year Dream) 회전 정기예금」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「이어드림(Year Dream) 회전정기예금」

■ 상품특징 : 약정한 회전주기별(12개월)로 이자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| 수당 | 하시는 |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구 | 분 | | | 내 용 | | | | | |
| 가입대 | 대상 | • 제한없음 (단, 비거주 외국인 가입 불가) | | | | | | | |
| 가입병 | 방법 | • 영업점 | | | | | | | |
| 해지병 | 방법 | 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및 | 모바일(SB톡톡 | 특+, i-Bank) | | | | | |
| 가입금 | 금액 | • 100,000원 이상 | | | | | | | |
| 가입기 | 기간 | • 24개월 이상 ~ 60개위 | 월 이하 (연 년 | 단위) | | | | | |
| 이자지급시기 | | | • 단리식(매월 이자지급식) • 복리식(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) : 매 회전주기 도래시 12개월 이자 지급, 원금은 자동 회전) | | | | | | |
| 예금자 보호여부 <mark>[해당</mark>] | | 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</u> 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| | | | | | | |
| 제한 사항 | |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)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| | | | | | | |
| | | | | | 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의 기준에 따라 약정이율이 변동됩니다. (기준일: 2025.06.02. 세전 / 단위: %) | | | | |
| | 기본 | 계약기간 | 연이율 | 연평균 수익율 | 비고 | | | | |
| 이자율 | . – | 24개월 이상 ~ 60개월 이하 | 2.65 | 2.68 |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+회차별 우대금리 제공 * 회차별 우대금리: - 1회차 : +0.15%, 2회차 : +0.2% 3회차 : +0.3%, 4회차 : +0.4% | | | | |
| | | 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연 | 업점 및 저축 (| 은행 홈페이지(| 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| | | | |
| | 만기 ㅎ | 경과기긴 | - | | 이 율 | | | | |
| | 후 | 1개월 이 | _H | 약정이율고 | 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이율 | | | | |

보통예금 이율 적용

1개월 초과
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| 구브 | 구 분 의 단의 의 단의 | | | | | | | |
| 만기이자 | 월 딘 | 위 | | 일 단위 | | | | | |
| 산출근거 | 단리식 원금×이율/ | | 원금×이율/365×일수 | | | | | | |
| LECT | 원금×{(1+이율/ 복리식 경과월 | , , , | 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 | | | | | | |
| 수익률 |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 | | | | | | | | |
| 만기의 자동해지 | 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 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히 체할 수 있습니다. | | • | | | | | | |
| | 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x 2 | | | 율 × 50%] | | | | | |
| | 예치기간 | 이 | 율 | 비고 | | | | | |
| | 1개월 미만 | |).4% | 보통예금 이율 | | | | | |
| |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| | × 50% | 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| | | | | |
| |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| | × 52% | 금리 설정 | | | | | |
| | 6개월 이상 ~ 12개월 비만 약성이율 × 55% | | | | | | | | |
| | •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중도해지 시, 12개월 이상 매 12개월 경과 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 적용 | | | | | | | | |
| 중도해지 | • 연장일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이율 적용 | | | | | | | | |
| 이율 | • 계산방법<예시> | | | | | | | | |
| 및 계산방법 | OLT S. C. | | | | | | | | |
| 416.0 | 약정이율 약정이율×55% | | | | | | | | |
| | 약정이원 | | 70 | | | | | | |
| | 약정이율×50% 보통예금 금 | | | 약정이율×50% 보통예금 | | | | | |
| | 1 2 2 | | | 긤 | | | | | |
| | 예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1개월미만 1개월이상 | | | | | | | | |
| | ~3개월 미만 ~6개월 미만 ~12개월 미만 (회전주기) ~3개월미만 | | | | | | | | |
| | ※ 가입기간 이 " 1개월 미만 "의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하 | | | | | | | | |
| |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| 헌법상 판매원칙 | 위반 시 <mark>일정</mark> | | | | | | |
| |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| | | | | | | | |
| 위법계약 해지권 |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. | | | | | | | | |
| 에서면 |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| | | | | | | | |
| |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| | | | | | | | |
| |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 | 6조에 따른 분 | 쟁조정 또는 <i>:</i> |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| | | | | |
| |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| | | | | | | | |
| |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| | | | | | | | |
| 자료열람 | 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(| 5영업일 이내에 지 | 료를 열람할 수 |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| | | | | |
| 요구권 |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| | — — . | 1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| | | | | |
| |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 | | | | | | | | |
| | 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| • | | | | | | | |
| |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 | 됴 얼담을 세한 | 아거나 거실알 | 수 있습니다. | | | | | |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|--|
| 세제혜택 | 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• 가입대상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 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|
| 분할해지 | •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 에서 분할해지 가능 |
| 자동재예치 |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|
| 연계·제휴 서비스 | 해당사항 없음 |

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·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·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| % | 게야체결 지 | HOLENO! | 내요은 | HF = XI | 확인하시고 | 서명/난이)? | <i>サム1フ</i> / | HFSFLITF |
|----------|--------|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ж | 勿号列章 仓 | <i>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</i> | 네ઠ글 | ひニペ | 릭 긴 아시끄 | ハゔ(ヨビバ | バヘノノ | <i>미립니다.</i> |

| 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경우, 충분히 | | | |
|---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| | 예 | / | | 아니오 | ☞ "중 | 도해지 | 이율 및 | 계산병 | 낭법" 항 | 목을 | 다시한빈 | 보 확인 | 해주세요 | | | |
| മ | 보호 | I은 | IBKスー | l 축 우 | 으행과 | 예금 | 거래를 | 한 아 | Ol (| 거 상 | 포섴 | 명서를 | 를 제 | <mark>공</mark> 받있 | 으며 | 위에서 | 너 설 |

| | | •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2 | 명한 니 | ዘ용을 | 포함하여 | 주요내용, | 를 제공받았으 유의사항에 | | |
| | 20 | • | | 1객명 : | | (서명 |] /인) |

◉ 금융용어 설명

| 용 어 | 내 용 |
|------|--|
| 압류 |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|
| äπ |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|
| 가압류 |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|
| 기업규 | 임시로 확보하는 일 |
| |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|
| 지긔서저 |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|
| 질권설정 |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|
| | 설정하는 일 |
| 경과기간 |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|
| 8파기간 |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|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